# 대리처방 안내

이료진이 입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제17조의2, 의료법제10조의2, 의료법시행교칙제12조의2

####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!

경우 1 ਂ 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 2

- ⊘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- ❷ 환자의 거동이 불능한 경우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등)
- ⊘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

###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

- ☑ 직계존·비속 (부모및 자녀등)
- ☑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부모등)
- 직계비속의 배우자 (사위, 며느리)
- ☑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- ☑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#### 구비서로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- 1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-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
-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대리처방을 강요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 **500만원** 이하의

## 대리처방 확인서

처방전 수령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환자와의 관계
	주 소	
환자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
대리 처방 사유		

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필요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환자 또는 처방전수령인

(자필서명)